

## 2기 국가인권위 발전기획단 민간초청 워크숍

### 대응 준비모임 제안서

#### ■ 들어가며

- 9월 중순부터 국가인권위는 내·외부 위원을 위촉하여 발전기획단을 운영해오고 있음. 조직혁신팀이 국가인권위 발전을 위한 하드웨어로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면, 발전기획단은 소프트웨어로서 업무전략·위상강화·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음. 현재 인권회의 소속단체로서 발전기획단 외부위원으로 결합하고 있는 단위는 다산인권센터, 세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4단체임.

- 발전기획단은 11월 15일을 전후하여(14일 또는 17일이 유력) 민간초청 워크숍을 열어 국가인권위 발전 기획에 관한 외부 전문가와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음. 이후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아 '정부부처에 대한 NAP 권고안'과 함께 자체 계획으로서 '2기 인권위 발전기획안'을 발표할 예정임. 민간초청 워크숍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한 뒤 발전기획단에 공식 요청함으로써 개최가 결정된 것임. 워크숍 개최를 요청한 이유는 1)발전기획단에 결합하고 있는 외부위원들은 민간 인권진영을 대표하여 결합한 이들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와 민간 인권진영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이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반큼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 2)인권진영의 고민과 의지를 모아낸 발전기획단을 마련함으로써 광범위한 합의와 추진 동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발전기획단의 운영 과정과 결과는 향후 3년간 국가인권위의 방향과 업무는 물론 한국 인권현실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 따라서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 발전기획단의 운영과 논의 상황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민간초청 워크숍에 결합하여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기를 바람.

#### ■ 국가인권위 발전기획단 개괄

##### 1. 발전기획단 설립 취지

○ 제2기 국가인권위원회의 본격 가동을 위한 조직발전 개기 마련 필요

- 제1기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한 위원회 발전방안을 모색

○ 위원회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

- 개인 논의, 무소속·독립·통합형·권고형 국가 인권기구라는 위원회 위상에 대한 위협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처

-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결정에 따른 차별시정 전담기구로서의 위상, 현재 조직혁신팀이 마련 중인 조직 개편안과 연계하여 위원회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 급변 딜에 정부

에 통보될 예정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대응하는 위원회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필요성 등

○ 이러한 조직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원회 위상, 업무, 역량을 차세대,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발전기획단」을 설립

- 위원회 발전기획단은 인권위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소수의 위원회 내부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3개 팀을 설치 (업무전략기획팀, 위상강화기획팀, 역량강화기획팀)

#### 2. 3개 팀의 주요 업무

##### ■ 업무전략기획팀

○ 2기 인권위 비전, 미션, 핵심가치 구체화, 향후 3년간(2006~2008년)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전략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등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 3개년 업무전략계획(Strategic Plan) 수립

##### ■ 위상강화기획팀

○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개획 및 실행 계획 수립

○ 무소속·독립·통합형·권고형 권리기관이라는 위원회 위상 위협요인(예: 인권위가 행정부 소속 기관이라는 정부의 주장, 사법부의 처분성 인정, 장애 차별위원회의 독자 설치 요구, 권고 불수용 등)에 대한 분석 및 대응책 마련

○ 인권위의 권한 및 기능강화에 대한 관계 국가기관(법무부, 행자부, 법원 등)의 지속적 반대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 헌법기판화 추진을 위한 대국민(국회, 언론, 학계, 단체) 설득 전략 수립

○ 국제사회에서의 위원회 위상제고 방안 수립 등

##### ■ 역량강화기획팀

○ 위원회 역량의 극대화를 위한 직원 전문성 제고 방안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식 공유·가공·화산을 위한 지식 경영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기획

#### 3.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기획단 구성

○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3개 팀(업무전략기획팀, 위상강화기획팀, 역량강화기획팀) 설치  
○ 내부 팀원 3명(팀장1, 과장급 1, 간사1)과 외부위원(5명 내외)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팀		명단
업무전략팀	외부 위원	김종식(폐지대 범대), 배경래(인권운동사랑방), 이창수(세사회연대), 장주영(변호사), 조호제(성공회대 교수)
	실무팀	팀장: 박찬운(인권정책국장) 팀원: 김상근(인권침해조사과장), 김명숙(인권교육담당관실), 이

		수연(차별조사), 임송(간사)
위상강화팀	외부 위원	서경석(인하대 법대), 송원환(다산인권센터), 이재명(참여연대), 임지봉(전북대 법대), 하승수(변호사)
	실무팀	팀장 : 김형원(인권상담센터 소장) 팀원 : 김성준(법무담당관), 김정린(인권상담센터, 간사)
역량강화팀	외부 위원	오창의(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이대훈(성공회대 연구교수), 정경수(순천대 교수), 최희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해외정보실장), 한상희(전국대 교수)
	실무팀	팀장 : 나영희(교육협력국장) 팀원 : 심민석(인권자료실장), 박숙미(전문위원, 간사)

#### ■ 운영 방안

- 활동기간 : 2005. 9. ~ 2005. 12. 10. (약 3개월)
- 팀 활동은 팀장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하되, 분과 통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무지원은 「업무협약 기회 분화」가 담당

#### ■ 민간초청 워크숍 대용 준비모임 제안

##### 1. 국가인권위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 구상

- 시기 : 미정(11월 17일경) -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워크숍 개최를 공지한다고 함.
- 개최 장소 : 미정(서울시내 모처)
- 참석 대상 : 약 100명
  - 위원회 내부 : 참석 회망 인권위원, 직원, 발전기획단 팀원
  - 위원회 외부 : 참석 회망 인권전문가/단체
- 워크숍 주요 내용(안)
  - 발전기획단 설립 취지와 팀별 주요 임무 소개
  - 그동안의 활동 내용 보고
  - 쟁점토론 : 2기 인권위 과제
  - 팀별토론 : 3개 팀 초안 중심 토론
- \* 워크숍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외부위원들이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발전기획단 초안을 중심에 놓고 이루어지는 워크숍이 된다면 참가자들이 수동적 위치에 머무르게 될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인권위 쪽에서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음. 따라서 워크숍 진행 방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2. 인권회의 워크숍 준비모임 구상

- 목적 : 워크숍 대용 준비모임은 인권단체들이 보다 준비된 자세로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기획단의 논의내용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워크숍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임
- 시기 : 11월 3일(목) 낮 1~4시

-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기라 소급 금박한 감이 없지 않고 이에 따라 11월 둘째주 중으로 워크숍 대용 준비모임을 개최할 수도 있으나, 11월 첫째주에 발전기획단 논의내용을 숙지한 후 둘째주 중에는 각 네트워크 혹은 단체별로 워크숍 대용 논의를 심화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11월 3일에 준비모임을 할 것을 제안함

- 장소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석대상 :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 활동가들, 인권교육네트워크,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등 인권단체 부문별 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들
- 내용
  - 3개 팀별 논의내용(쟁점들) 보고 및 질의응답
  - 인권위 조직혁신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
  - 워크숍 대용 논의(워크숍 진행계획 공유, 단체별 미리 고민할 사항들, 기타)

\* 워크숍 대용 준비모임에서 발전기획단에 대한 개괄은 별도로 하지 않고 이 제안서로 대체함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 개최 계획(안)**

## **1. 워크숍 개최 필요성**

- 발전기획안에 인권 전문가/단체 의견을 반영할 필요
- 발전기획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추진동력 형성
- 인권단체의 워크숍 개최 요구 수렴

## **2. 워크숍 개요**

가. 일 시 : 11. 21.(월) 10:00 - 18:00

나. 장 소 : 서울 여성 프라자 (대방동 소재)

나. 참석 대상: 약 100명内外

- 위원회 임직원 : 위원장, 참석희망 인권위원 및 직원
- 발전기획단(22명) : 단장(사무총장), 3개팀(업무전략기획팀, 위상강화기획팀) 팀장, 내부팀원 및 외부위원

\* 역량강화기획팀은 임무의 기술적 성격에 비추어 외부위원의 참가 필요성이 낮으므로 내부팀원만 참가

- 위원회 외부 : 참석희망 인권전문가/단체

\* 정책자문위원,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인권강사단, 인권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참석 희망 여부 조회

다. 워크숍 프로그램 : 별임 참조

### 3. 소요 예산(추정) : 470만원

비 목	금 액	예산과목	비 고
○ 회의장 임차료	70만원	1111-212-201-01	*3개 회의장
○ 식사비	130만원(6,500원*100명*2식)	1111-151-202-01	*구내식당
○ 자료집 제작	100만원	1111-212-201-01	
○ 다과비	20만원	1111-212-204-01	
○ 국내여비	50만원	1111-151-202-01	*지방참석자
○ 기타회의 운영경비	100만원	1111-212-201-01	
합 계	470만원		

### 4. 향후 추진 일정

- 워크숍 개최 계획안 확정 : 11. 3.
- 워크숍 참가여부 조회 : 11. 4.~11. 14.
- 워크숍 참가자 확정 : 11. 15.
- 발전기획단 전략계획 초안 송부 및 의견조회 : 11. 14.~11. 21.
- 워크숍 개최 : 11. 21.

## 워크숍 프로그램[안]

시 간	진행내용	진행자
09:30~10:00	등록	직원 3명 배치
10:00~10:45 (45분)	위원장 인사말씀(5분) 기획단 설립 취지 및 경과보고(5분) 기획단원 소개(5분) 워크숍 일정 안내 전략계획 초안 발표(30분)	전체사회: 김형완 팀장 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총장 사회자 업무전략기획팀장(정책국장)
10:45~12:00 (1시간 15분)	질의 및 전체토론	진행: 정책국장
12:00~13:00 (1시간)	점심	
13:00~15:30 (2시간 30분)	제1세션 : 위원회 기능별 우선 과제 논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방안 △국제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 구축 방안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방안 △범 국민적 인권의식 고취 방안	*사회자/정리자는 분임 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분임별 기획단 외부위원 1명씩 촉진자로 배정
15:30~16:00 (30분)	휴식	
16:00~17:30 (1시간 30분)	제2세션 : 인권위 위상 및 역량 강화 △인권위 위상 및 역량 강화 방안 △국내외 인권단체/개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방안	"
17:30~18:30 (1시간)	저녁식사	
18:30~20:00 (1시간 30분)	분임토의 결과 발표, 전체토론 및 정리	진행: 정책국장 마무리 말씀: 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

## 대응 인권단체 준비모임

○ 때: 2005년 11월 3일(목) 오후 1시

○ 곳: 천주교인권위원회

○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 <참고자료 1> 국가인권위 발전기획단 개괄

#### 1. 발전기획단 설립 취지

○ 제2기 국가인권위원회의 본격 가동을 위한 조직발전 계기 마련 필요

– 제1기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한 위원회 발전방안을 모색

○ 위원회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

– 개헌 논의, 무소속독립·통합형·권고형 국가 인권기구라는 위원회 위상에 대한 위협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처

–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결정에 따른 차별시정 전담기구로서의 위상, 현재 조직혁신팀이 마련 중인 조직 개편안과 연계하여 위원회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 금년 말에 정부에 통보될 예정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대응하는 위원회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필요성 등

○ 이러한 조직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원회 위상, 업무, 역량을 체계적,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발전기획단」을 설립

– 위원회 발전기획단은 인권위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소수의 위원회 내부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3개 팀을 설치 (업무전략기획팀, 위상강화기획팀, 역량강화기획팀)

#### 2. 3개 팀의 주요 임무

##### ■ 업무전략기획팀

○ 2기 인권위 비전, 미션, 핵심가치 구체화, 향후 3년간(2006~2008년)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전략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등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 3개년 업무전략계획(Strategic Plan) 수립

##### ■ 위상강화기획팀

○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

○ 무소속독립·통합형·권고형 권리기관이라는 위원회 위상 위협요인(예: 인권위가 행정부 소속 기관이라는 정부의 주장, 사법부의 처분성 인정, 장애 차별위원회의 독자 설치 요구, 권고 불수용

등)에 대한 분석 및 대응책 마련

- 인권위의 권한 및 기능강화에 대한 관계 국가기관(법무부, 행자부, 법원 등)의 지속적 반대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 헌법기관화 추진을 위한 대국민(국회, 언론, 학계, 단체) 설득 전략 수립
- 국제사회에서의 위원회 위상제고 방안 수립 등

#### ■ 역량강화기획팀

- 위원회 역량의 극대화를 위한 직원 전문성 제고 방안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식 공유·가공·확산을 위한 지식 경영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기획

### 3.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기획단 구성

-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3개 팀(업무전략기획팀, 위상강화기획팀, 역량강화기획팀) 설치
- 내부 팀원 3명(팀장1, 과장급 1, 간사1)과 외부위원(5명 내외)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팀	명단	
업무전략팀	외부 위원	김종서(배재대 법대),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이창수(새사회연대), 장주영(변호사), 조효제(성공회대 교수)
	실무팀	팀장 : 박찬운(인권정책국장) 팀원 : 심상돈(인권침해조사과장), 강명숙(인권교육담당관실), 이수연(차별조사), 임송(간사)
위상강화팀	외부 위원	서경석(인하대 법대), 송원찬(다산인권센터), 이재명(참여연대), 임지봉(건국대 법대), 하승수(변호사)
	실무팀	팀장 : 김형완(인권상담센터 소장) 팀원 : 김성준(법무담당관), 김정린(인권상담센터, 간사)
역량강화팀	외부 위원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이대훈(성공회대 연구교수), 정경수(순천대 교수), 최희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해외정보실장), 한상희(건국대 교수)
	실무팀	팀장 : 나영희(교육협력국장) 팀원 : 심민석(인권자료실장), 박숙미(전문위원, 간사)

#### □ 운영 방안

- 활동기간 : 2005. 9. ~ 2005. 12. 10. (약 3개월)
- 팀 활동은 팀장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하되, 분과 통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무지원은 「업무전략 기획 분과」 가 담당

### 4. 민간초청 워크숍 개최 계획(안)

### ◎ 워크숍 개최 필요성

- 발전기획안에 인권 전문가/단체 의견을 반영할 필요
- 발전기획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추진동력 형성
- 인권단체의 워크숍 개최 요구 수렴

### ◎ 워크숍 개요

가. 일 시 : 11. 21.(월) 10:00 ~ 18:00

나. 장 소 : 서울 여성 프라자 (대방동 소재)

나. 참석 대상: 약 100명 내외

- 위원회 임직원 : 위원장, 참석희망 인권위원 및 직원
- 발전기획단(22명) : 단장(사무총장), 3개팀(업무전략기획팀, 위상강화기획팀)  
팀장, 내부팀원 및 외부위원
  - \* 역량강화기획팀은 임무의 기술적 성격에 비추어 외부위원의 참가 필요성이 낮으므로 내부팀원만 참가
- 위원회 외부 : 참석희망 인권전문가/단체
  - \* 정책자문위원,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인권강사단, 인권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참석 희망 여부 조회

### ◎ 워크숍 프로그램

시간	진행내용	진행자
09:30~10:00	등록	직원 3명 배치
10:00~10:45 (45분)	위원장 인사말씀(5분) 기획단 설립 취지 및 경과보고(5분) 기획단원 소개(5분) 워크숍 일정 안내 전략계획 초안 발표(30분)	전체사회: 김형완 팀장 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총장 사회자 업무전략기획팀장(정책국장)
10:45~12:00 (1시간 15분)	질의 및 전체토론	진행: 정책국장
12:00~13:00 (1시간)	점심	
13:00~15:30 (2시간 30분)	제1세션 : 위원회 기능별 우선 과제 논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방안 △국제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 구축 방안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방안 △범 국민적 인권의식 고취 방안	*사회자/경리자 는 분임에 서 자율적으로 선정 *분임별 기획단 외부위원 1 명씩 촉진자로 배정
15:30~16:00 (30분)	휴식	
16:00~17:30 (1시간 30분)	제2세션 : 인권위 위상 및 역량 강화 △인권위 위상 및 역량 강화 방안 △국내외 인권단체/개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방안	"
17:30~18:30 (1시간)	저녁식사	
18:30~20:00 (1시간 30분)	분임토의 결과 발표, 전체토론 및 정리	진행: 정책국장 마무리 말씀: 사무총장

## <참고자료 2> 업무전략팀 주요 논의 내용

구 분	팀 초안									
Vision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증진되는 사회									
사명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명에 헌신한다. 1. 국가인권기구로서 국가권력을 감시한다. 1.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1. 인권에 관한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리더쉽을 발휘한다.									
가치	핵심 가치(Core Values)	인권의 보편성(universal), 불가분성(indivisible), 불가침성(inalienable), 양도 불가능성(imabrogable)			운영원칙(Operational Principles)	독립성(Independence), 전문성(Professionality), 다원·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 합리성·예의와 헌신(Courtesy and Commitment)				
10대 전략 목표	1.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2.국제적 수준의 인권 제도 및 관행의 구축	3.차별시정 기능 강화	4.인권예방 기능과 현 장성 강화	5.권리 구제의 실효성 제고	6.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	7.인권홍보를 통한 인 권가치의 보편화	8.국제인권기구 및 국 내외 정부/비정부 기 구와의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	9.위원회 기능의 통합 적 수행	1.
전략기획 (Strategies)	1.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역점을 둔 인권정책  1.1.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구축  1.2.국제적 수준의 인권 제도 및 관행 구축  1.3.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2.인권피해자의 민족도를 높이는 조사·구제				1.1.1.사회권 상황실태조사와 그 활용 1.1.2.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1.1.3.인권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사회권 연구, 제3세대 인권 연구 등)  1.2.1.정부의 인권NAP의 수립과 그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1.2.2.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협의 및 제도개선(국제기구로부터 받은 권고의 즉각적 이행을 위한 국내 행동계획 수립 지원) 1.2.3.주요 국제 인권논의에의 적극 참여(해외인권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맨체마킹) 1.2.4.인권침해 가능 기관의 관행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1.2.5.주요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 * 아시아 인권체계 구축을 위한 경제모델 개발, 인권법 제정추진					

	<p>2.1. 인권친화적인 권리 구제 서비스 제공</p> <p>2.2.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p> <p>2.3. 차별시정을 위한 인프라 정비</p> <p>3.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및 홍보 실시</p>	<p>2.1.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p> <p>2.1.1.1. 필터링 기능 강화(권문처리시스템 활성화, 권리구제 창구의 다양화-NGO 네트워크 활용 등)</p> <p>2.1.1.2. 사건처리 체계 정비(조사관 1인당 적정 사전 수 고려, 조사구제 매뉴얼 개발보급 등)</p> <p>2.1.1.3.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개발·실시</p> <p>2.1.2. 인권 친화적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p> <p>2.1.2.1.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사법적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영역, 사법적 권리구제가 가능하나 접근성이 험악한 영역, 인권의 갖는 영역 등)</p> <p>2.1.2.2. 인권 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 개발·실시</p> <p>2.1.2.3. 진정인 민족도 제고(고객민족 시스템-진정처리 안내 시스템, 진정인 민족도 조사, 진정인 고충처리 서비스 제공-개발운영, 조사관에 대한 육·설시 등)</p> <p>2.2.1.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인권예방 정보체계-인권 및 차별 지수, 관련통계 등-개발, 인권위약분야-미신고·검터 등-를 조사대상에 포함 등)</p> <p>2.2.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p> <p>2.2.2.1. 연도별 충접 사전 예방적 활동 분야 선정·공개</p> <p>2.2.2.2. 인권위원회의 인권현장 방문 활성화</p> <p>2.2.2.3. 인권보호를 위한 기동반 운영</p> <p>2.2.3. 기획조사(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기능 활성화</p> <p>2.2.3.1. 연도별로 분야별 기획조사 실시 계획을 별도 수립 운영</p> <p>2.2.3.2.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접근(감경, 교정 등 분야는 관행제도 개선에 주력, 군, 다수인 보호시설 등은 인권개선 기반 조성에 주력 등)</p> <p>2.2.4.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실무차원의 협력 강화</p> <p>2.3.1. 차별 금지법 제정</p> <p>2.3.2. 인권위법상 차별 시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p> <p>2.3.3. 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p> <p>2.3.4. 차별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체계 구축</p> <p>2.3.4. 차별 사유별/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활용</p> <p>3.1.1.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p> <p>3.1.2. 인권교육을 위한 협의체 구성</p>
	3.1. 인권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p>3.1.3.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p> <p>3.1.4. 인권교육자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p> <p>3.1.5. 분야별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p>
3.2.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p>3.2.1. 인권교육 과정 마련</p> <p>3.2.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p> <p>3.2.3. 교사 인권연수 프로그램 운영</p> <p>3.2.4. 아동·청소년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행사 지원</p> <p>3.2.5. 친인권적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실시</p>
3.3.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기반 구축	<p>3.3.1. 공공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협의체제 구축</p> <p>3.3.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p> <p>3.3.3. 공무원 인권연수 프로그램 개설·운영</p> <p>3.3.4. 군인·별 집행 공무원 등 우선대상의 인권교육 집중 지원</p>
3.4. 인권의식제고를 위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	<p>3.4.1. 언론·기업체·다수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 인권교육 우선대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p> <p>3.4.2. 인권 전문가/단체의 인권교육 활동 지원</p> <p>3.4.3.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개발 지원</p> <p>3.4.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실시 지원</p>
3.5. 인권홍보 기능 강화	<p>3.5.1. 자유권, 사회권, 차별문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권홍보전략 수립·실시</p> <p>3.5.2.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위원회의 인권수호 의지, Best Practice 중심으로)</p>
4. 위원회 발전기반 조성	
4.1. 위원회의 위상 강화	<p>4.1.1.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p> <p>4.1.2. 권리구제·변별성 확보</p> <p>4.1.3. 권고의 실효성 강화</p>
4.2. 위원회의 역량강화	4.2.1. 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p>4.2.2. 주요 영역별 전문성 현장성 강화를 위한 통합 기능팀 운영</p> <p>4.2.3. 위원회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확립</p> <p>4.2.4. 위원회 구성원의 윤리의식 고양/강화</p> <p>4.2.5. 위원회 구성원의 학습기능 강화</p> <p>4.2.6. 인권정보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 구축</p> <p>4.2.7. 인권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협력체계 강화</p> <p>4.2.8. 지방사무소 확산 및 역량 강화</p>
4.3.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정부/비정부 기구와의 협력체계 강화	<p>4.3.1. 국제인권 기구와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p> <p>4.3.2.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력 발휘(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활성화 포함)</p> <p>4.3.3. 아시아 지역의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지위 및 역할 강화 ※ 인권위 전재부문별 민간 인권전문가의 협력관계 철령 창출, 아시아 인권정보센터 설립, 국제협력기금을 통한 국제인권발전을 위한 공적기여 확대, 유·인권증진을 위한 협력강화, 국제인권이슈에 대한 적절한 입장표명, 국제인권조약 협성과정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체계적 준비, 인권발전을 위한 시</p>
4.4.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	<p>4.4.1.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p> <p>4.4.2. 외부 의견 수렴 및 반영 체계 확립</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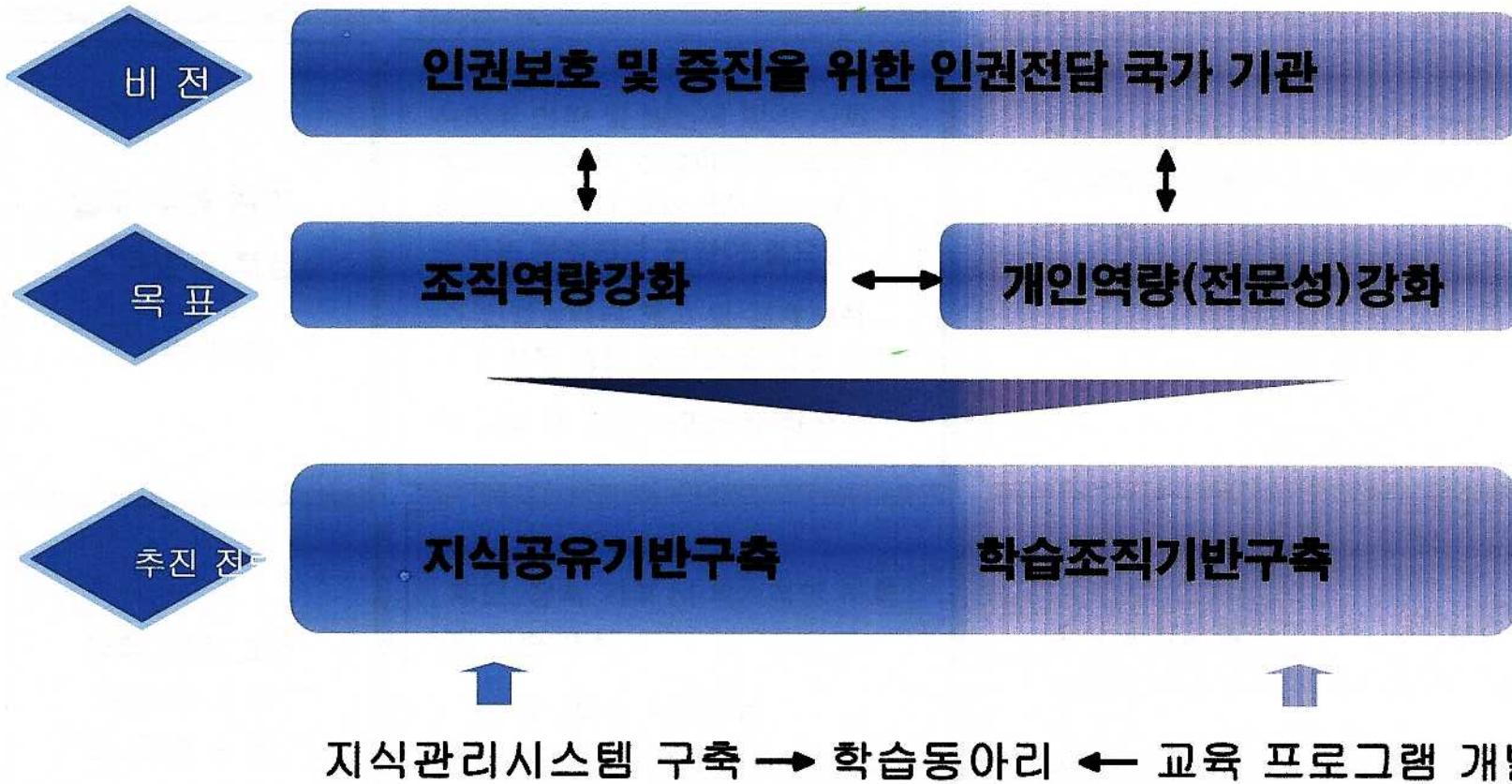
<참고자료 3> 위상강화팀 주요 논의 내용

비전과 가치	전략적 목표	전략적 계획	실행 계획	실행 프로그램
비전(Vision) 인권문제를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믿음직한 대안적 권리구제 기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기관 인권영역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있는 인권전문 기관	독립성 강화	위원회의 명확한 역할과 위치 설정	1. 위원회의 명확한 역할 설정	1) 위원회 역할과 권한에 대한 해설서 마련 2) 위원회 역할과 권한에 대한 조직구성원 교육 3) 정기적인 위원회-사무처 각 단위별 종횡 W/S 4) 리더십의 비전 및 목표 공유 5) 위원회 구성, 임기 및 운영에 대한 검토
가치(Values) 독립성(Independence) 전문성(Professionality) 다원성(Diversity)			2. 위원회의 위치 설정	1) 국내기관 및 시민사회,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토론회, 설명회, workshop, MOU 등) 2) 대외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3) 높은 수준의 윤리강령 제발
원칙(Principles)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3.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홍보강화	1) 위원회 차원의 통합적 홍보 전략 계획 수립 2) 위원회의 Best practice 발굴 3) 공간 재배치 및 상시적 touring program 가동 4) 전문가 집단 및 관계기관, 시민사회, 국민대상 수시 이미지 조사 5) Web-zine 및 mailing-list 활용 6) 언론 대상 수시 간담회, 브리핑 운영
			4. 위원회의 환경동향 파악	1) 환경요소에 대한 수시, 정기적인 동향 분석 2) 위기관리전략 수립
		헌법기구화 추진	1. 위원회의 헌법기구화 논리 개발 2. 지지세력 조직 및 개발	1) 헌법기구화 추진 TFT구성 및 헌법기구화 논리 개발 2) 후발 헌법기관 및 외국 유사기관 사례 검토 3) 헌법학회, 변협, 언론인 등 여론선도그룹 의견조회
				1) 각계 리스트 확보 및 핵심인사 선정 2) 핵심인사 집중관리

합리성(Rationality) 예의와 헌신성(Courtesy & Commitment)	비전(Vision) 인권문제를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믿음직한 대안적 권리구제 기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기관 인권영역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있는 인권전문 기관 가치(Values) 독립성(Independence) 전문성(Professionality) 다원성(Diversity)	권리구제의 독자적 영역 확보 권리구제 변별성 확보 효과적인 권리구제 체계 확립 예방적 권리구제 강화	3. 여론 형성 1. 창의적인 법해석과 국제인권기준의 적극적 활용 2. 위원회 주력 인권영역 개발 1. 권리구제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터링 기능 강화 2. 비공식적 해결 및 중재 등 대안적 갈등해결방법 개발 3. 대국민 서비스 제고	3) 지지그룹에 대한 관리 4) 지역단체 및 지역 여론 조직 5) 국제사회 지원 및 여론 조직			
				1) 개헌시 기본권 강화 관련 심포지엄, 토론회 개최 2) 국내외 헌법기관화 사례 발굴 및 연구 3) 필요시 개헌안 중 기본권 관련 의견 표명 4) 위원회의 best practice case 발굴, 홍보			
				1) 관련 국내법 해석 및 판례, 국제인권기준 및 사례의 수집, 분석, update 2) 광범위한 실태조사 실시			
				1) 주력 인권영역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 주력 인권영역 선정 및 실행 전략 수립			
				1) 판문처리시스템(gate keeping system) 활성화 2) 권리구제 창구의 다양화 : NGO네트워크 활용 3) 기회조사 및 직권조사 역량 집중 4) 정책, 제도 개선 진정사건의 조사국 직송부			
				1)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개발 - 조정, 중재의 적극적인 활용 - 대안적 분쟁해결모델(ADR) 개발 - 인적자원의 전문성 개발 및 축적			
원칙(Principles)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합리성(Rationality)				1) 고객만족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 - 진정인 고충처리 서비스 제공 - 인권보호 기동반 운영 2) 직원대상 서비스 교육 실시			
				1) 인권영향평가제 확보			

<p>예의와 헌신성(Courtesy &amp; Commitment)</p> <p>비전(Vision) 인권문제를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믿음직한 대안적 권리구제 기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기관 인권영역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있는 인권전문 기관</p> <p>가치(Values) 독립성(Independence) 전문성(Professionality) 다원성(Diversity)</p> <p>원칙(Principles)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p>		조사권한 확대 및 강화	2. 인권예고시스템 구축	1) 국미제안 창구 마련
			3.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강화	1) 인권교육 컨텐츠 개발 - 도서,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 2) 주요 대상별
			1. 기획조사의 적극적인 활용	1) 기획조사 활성화 2) 기획조사와 홍보전략의 연계
			2. 확보된 조사권 활용의 극대화	
			3. 법률개정을 통한 조사권 강화	
	권고실효성 강화	조사권한 강화	위와 동일	
			1. 권고의 질적 향상	1) 국제인권기준의 적극적 활용 - 영역별 국제인권기준 확보 및 적용 -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 홍보
		권고 이행력 제고	2) 권고안의 질적 향상	2) 권고안의 질적 향상 - 인권개선 실효성 및 실행가능성 높은 권고안 - Positive 권고안 - 위원회 인적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축적
			2. 권고의 이행강제력 확보	1) 구속력있는 구제권 확보(명령권 등) 2) 인권재판소 설치 3) 권고 수용에 대한 회답의무 및 이행계획서 제출
			1. 다양한 이해관계집단과의 업무 협력 체계 구축	1) 사회협약(MOU, MOA등) 활성화 2) 정책협의회 및 consultation 운영
		파트너십 강화	2. 외국NI 및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	1) 상시적 정보교환 채널 마련 및 운영 2) 공동 인권 이슈에 대한 공동프로젝트 추진 3) 국제 인권단체와의 인적 교류 및 연수기회 확대

## 1. 국가인권위원회 역량강화 추진 전략



## \* 주진 세부 전략 : 위원회 기능 2원화 접근 필요함

업무 수행 전략  
→ 차별적 핵심

역량 파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차별  
화 전략 수립

### 사회적 인권 기준 제시자 역할

- 사회적 변화 및 발전에 따라 사회기능도 지속적의 변화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시대를 반영하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함
- 인권능력의 제고 및 경제사회 문화적 증진 방향으로 입법 추진
- 사회적 관행 파괴 능력 향상

### 제도, 정책 기획 시 획기적인 사회

의 기준 제시

- 실정법을 뛰어넘는 인권 논리 개발 필요

### 진정사건의 최종 기착지의 역할

- 사회적 다양한 구제기관에서 구제 받지 못한 사안들에 대한 최종 처리 기관의 역할
- 사건처리 조사기법의 실체적 접근

### → 조사기법 교육(매뉴얼화 가능)

조사 유형을 범주화하여 그에 따른 상황별 대처 능력 및 결과 유추 기법

- 대인관계 skill 교육(커뮤니케이션 교육 등)  
진정인 또는 피 진정인의 품성에 따라 대응 방법 습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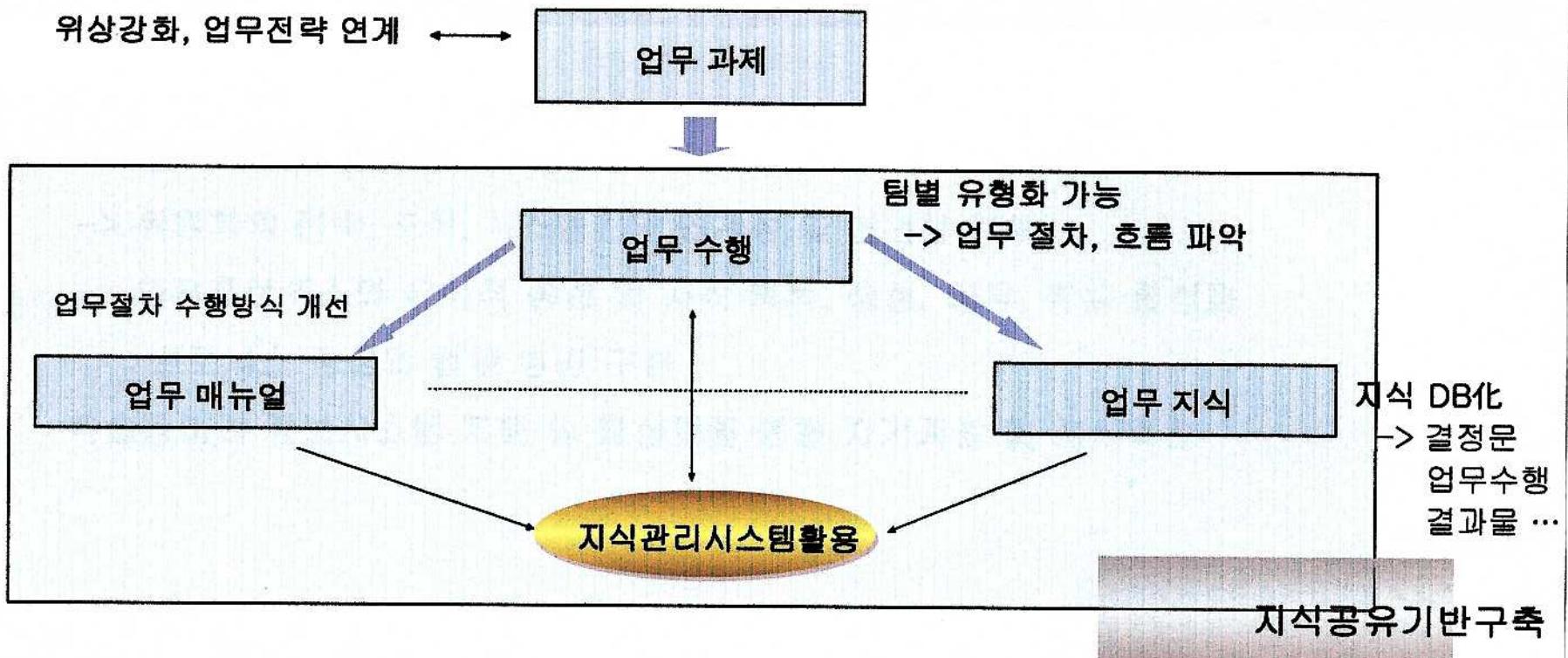
## 1.1 조직역량 강화 방안 개요

조직 역량

개인역량(전문성)강화

-> 창조적이고 능동적이며 자율적인 개인 능력 고양

## 1.2 개인역량(전문성) 강화



학습조직기반구축

교육프로그램개발

기본교육 : 신규직원교육(인권교육, 직무교육)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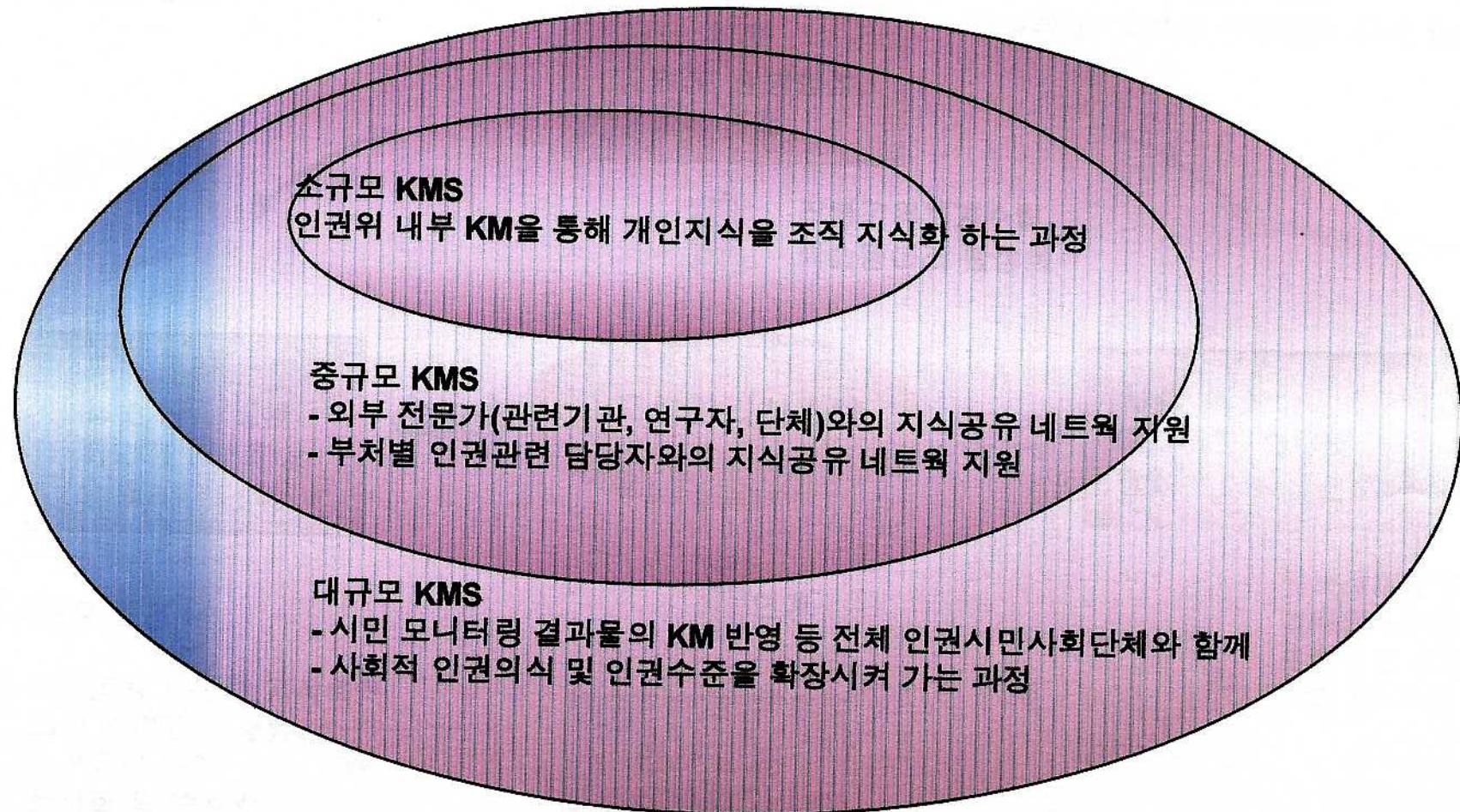
전문교육 : 재교육(인권심화교육, 직무심화교육)  
특별한 목적하에 실시되는 교육

## 2. 지식공유 기반 구축 전략(1)

-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
  - > 위원회의 전략, 조직, 시스템 간의 연계성 및 연관성 강화
  - > 업무프로세스의 유기적 통합 및 지식 획득, 생성, 공유, 활용 활성화
    - : 프로세스 중심의 업무 환경 구현
- 학습동아리 정보시스템 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자기계발 및 지식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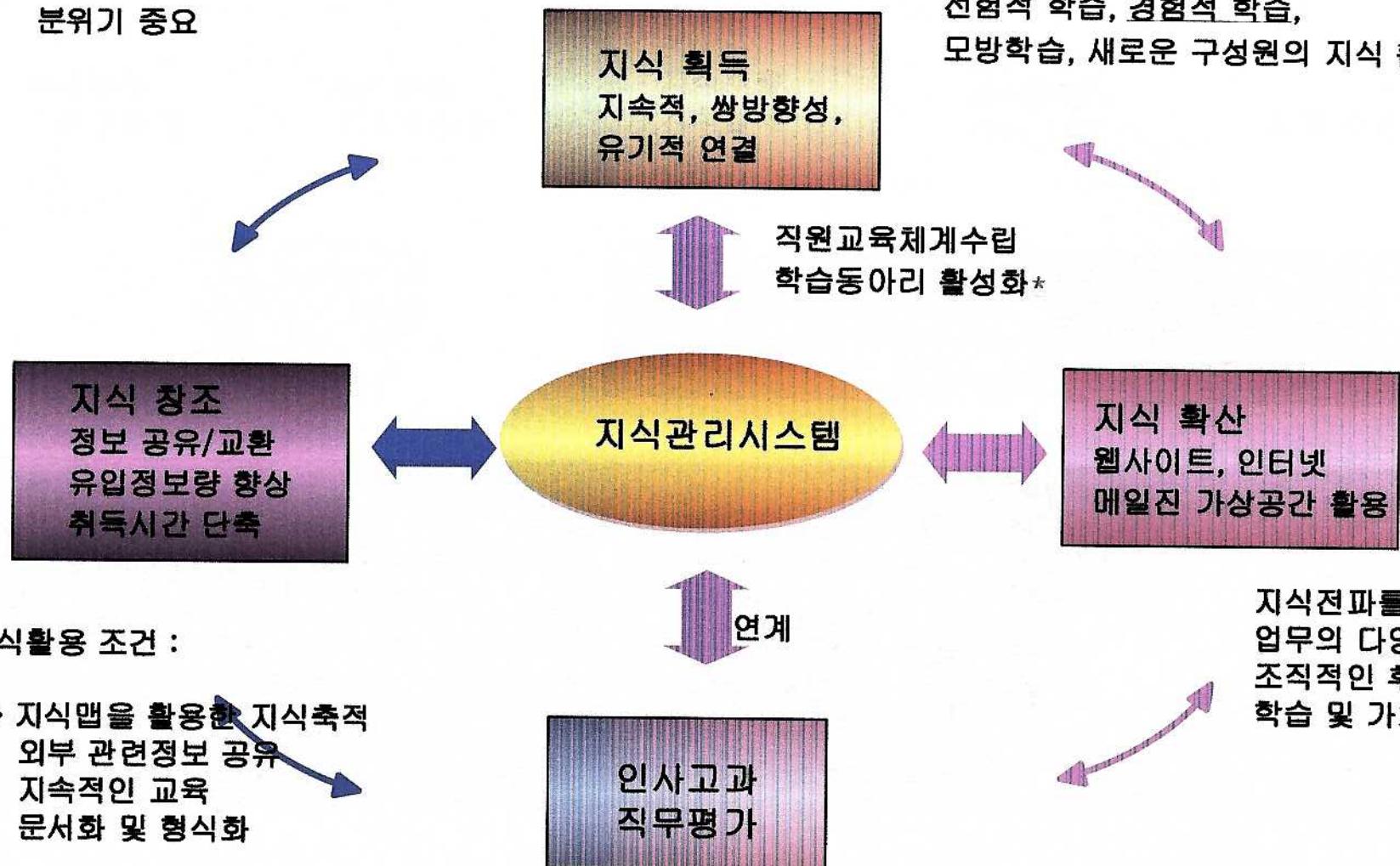
- 전직원의 참여의 창, 내 외부 협력의 장, 투명하고 효율적인 일터
- 지식자산의 축적과 활용 (문서화, 공유, 활용 문화 정착)
- 국내외 유관기관, 일반 국민과의 지식 네트워크 형성 필요

## 2. 지식공유 기반 구축 전략(2)



## \* 지식관리 시스템 : 지식의 획득, 창조, 확산의 선 순환 과정

-> 지식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조직 분위기 중요



## \* 지식공유 활성화 방안

지식획득  
(외부지식)

지식생성  
(내부지식)

지식추출  
지식정제

지식저장  
지식공유

지식 활용

유지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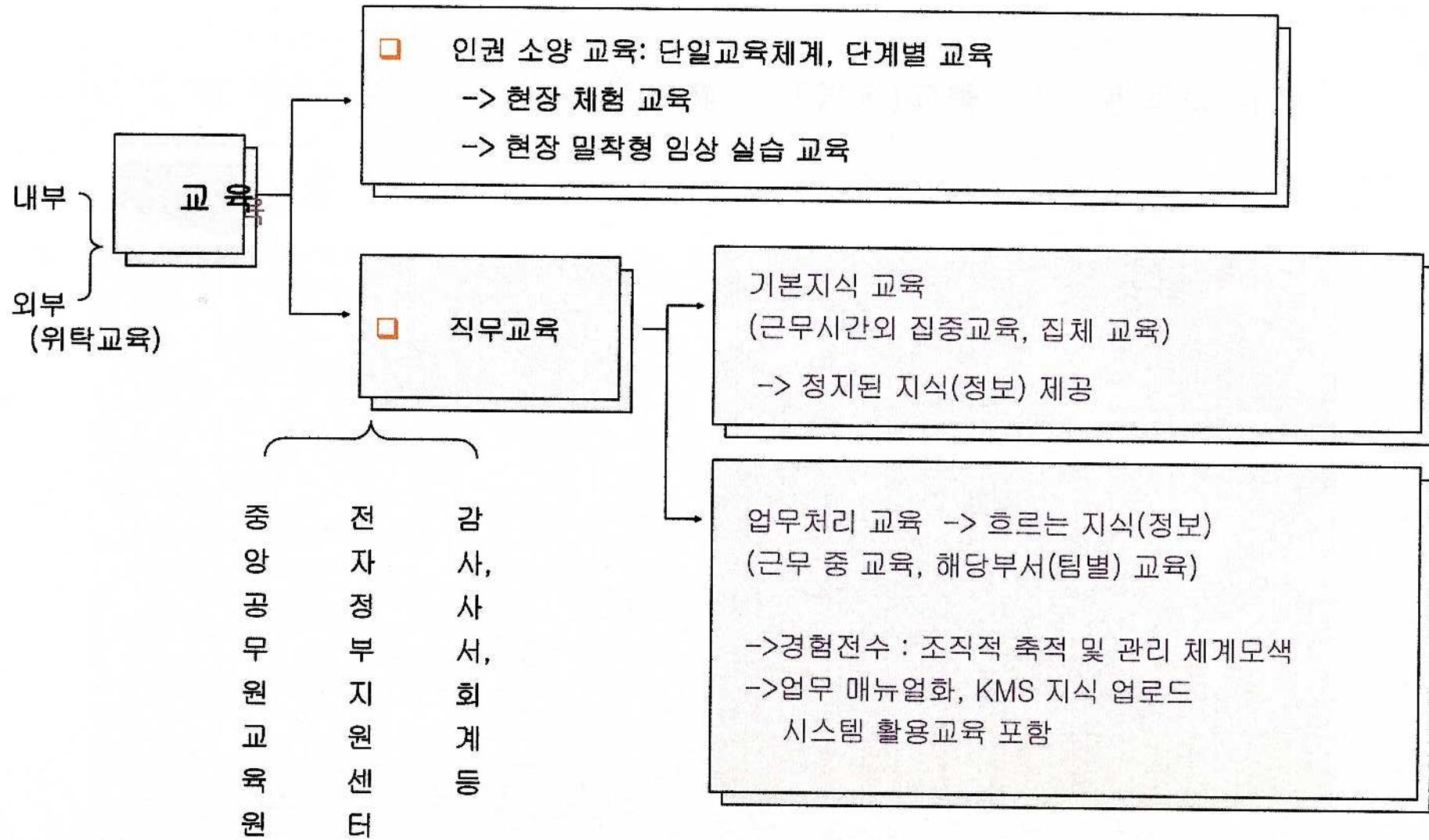
적극적인 조직문화 형성  
타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

인센티브 제도 : 평가지표의 체계성 (마일리지 제도의 구체성과 접합성)  
-> 인사시스템과 연계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체계 (운영 프로세스 체계화, 적절한 지원, 보상)

지식관리 : 컨텐츠의 질 관리 (지식 검증, 필터링, 업데이트)

### 3.1 교육프로그램 개발(2)



### 3.2 직무별 핵심 전문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유형(1)

정책 기획

조사 구제     (인권)교육

관리자 계층



의제 파악 및 개발 능력, 기획 조정 능력, 업무추진력

- 위원회 전체 업무 파악 능력
- 국제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외국어 해석 능력
- 법리에 의한 법 해석과 인권 측면의 전향적인 해석능력의 조화
- 다방면의 깊은 전문지식과 넓은 적용 능력 필요
  - 교육프로그램유형
    - 국제 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 교육
    - 국내외 인권의제 분석 교육, 인권정책영향분석 교육, 기획력 교육

### 3.2 직무별 핵심 전문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유형(2)

정책기획

조사구제

(인권)교육

관리자 계층

#### 조사기법 및 상황 대응능력 등 전문지식의 전수 시스템화

- 사실관계 조사능력, 진정인 심리관리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 멘토링 시스템 마련
- 보고서 및 각종 양식의 표준화 : 업무처리 중복 방지 및 처리절차 단순화
- 유형별 대처 표준화 : 조사관의 개별적인 해석 지양 필요
- 교육프로그램유형
  - 침해 구제 - 의사소통기술 및 **People skill** 교육, 갈등해결능력 교육, 치유기법 교육, 사회복지사 교육에 준하는 인권활동가 교육
  - 차별 조사 - 차별조사기법 매뉴얼 교육, 영역별 차별판단에 대한 매뉴얼 교육, 설득 협상능력 상담기법 및 치유기법 교육, 대 국민 서비스 교육, 갈등해결 및 조정능력 교육

### 3.2 직무별 핵심 전문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유형(0)

정책기획

조사구제

(인권)교육

관리자 계층

#### 자발적인 연구 학습 조직 상설 운영

- 신규직원의 인권감수성 교육의 체계화, 재 교육 기회 마련
- 학습과 연구를 위한 공동 워크샵 상설 운영(CoP)
- 교육수행부서 직원의 강의 기법, 교육프로세스 등 습득 기회 마련
- 내 외부 교육의 비용 효율성 검토
- 교육프로그램유형
  - 교육 대상별 특성 및 접근방식에 대한 교육, 의사소통 및 관계개선 교육
  - 온라인 교육모듈 구축의 기법과 활용방안 교육, 공공관계 개선 관련 교육

### 3.2 직무 핵심 전문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유형(4)

정책기획

조사구제

(인권)교육

관리자 계층

관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상시적 운영

팀장 및 상위관리자 : 리더십 교육, 커뮤니케이션 스킬, 갈등해결기법  
회의진행 기법, 비전제시훈련, 전략적 사고 기법 등 개발

팀워크 훈련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공동

## <참고자료 5> 국가인권위 직제개편 주요 방향

### ■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

- 팀제 도입을 통해 성과·자율·책임을 구현하는 조직으로 재편성
  - 부분적인 계층구조 축소와 함께 권한의 위임을 통해 실현
  - 연공서열 중심의 1직위 1직급 주의를 벗어나 능력에 따라 책임을 부여하는 탄력적 직급제로 전환
  - 집단평가를 개인평가보다 우선하고 일회적·인상적·연공 중심의 평가 대신 누적적·객관적·능력 중심의 평가를 추구하는 시스템 구축
- 진정사건 처리 업무의 효율화 및 선택과 집중
  - 기초조사, 면전진정 전담제 도입 및 조정제도 등의 활용
  - 선별된 진정사건의 집중 처리를 통해 사건 처리의 질 제고
- 인권 현안에 대한 전략적·체계적 접근을 고려한 통합기능팀 설치
  - 폭넓은 인권 영역과 무수한 인권 현안 가운데 업무계획과 전략적 비중을 반영하여 단위 부서 설치  
※ 팀별 규모는 3명 ~ 15명까지 다양. 향후 업무평가를 통해 신축적으로 분야별 팀 및 정원 조정
  - 제도·정책연구, 조사, 협력, 이행점검 등 해당 분야의 인권개선을 위한 종합적 접근으로 핵심 인권 분야에 대한 체계적 대응 도모
  - 팀원간 협력 발휘로 전방위적 전문역량의 조기 구축 도모
  - 업무 관련 대내외 협력 및 홍보 기능의 실질화

### 나. 주요 개편 내용

- 인권정책과 위원회 운영기획의 분리(인권정책본부, 행정기획본부)
  - 인권정책본부에 정책총괄팀, 국제인권팀, 인권연구팀을 두되 우리 사회 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적 접근 담당
  - 행정기획본부에 재정기획팀(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예산·국회), 혁신인사팀, 정보관리팀을 두되 위원회 차원의 업무·재정·인력 등 기획기능 수행
- 주요 인권 분야에 대한 통합적 접근(인권침해구제본부, 차별시정본부)
  - 영역별로 사건조사, 실태조사, 법·제도 개선, 관련 기관·단체 협력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업무중복 방지 및 일관성 유지

- 개별 진정사건에만 매몰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인권침해 요인과 그 대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영역별 전문성 제고
- 위원회의 중점분야를 자유권, 평등권 및 사회적 약자 인권 등으로 대별하고 진정사건 수와 전략적 비중을 감안하여 재구성

#### ● 진정사건 조사구제의 선택과 집중 도모(인권상담센터)

- 기초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진정내용을 조기에 확정하고 각하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진정인 만족도 제고 및 각 분야별 진정사건 부담 경감
- 면전진정 전담직원을 운영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 상담단계에서 조정제도 활용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한' 인권구제 활동 전개

#### ● 주요 안건 법리검토 기능과 의사행정의 분리(법무담당관, 운영지원팀)

- 법률 자문기능의 강화
- 의사행정은 운영지원팀에서 담당

#### ● 인권교육 기능의 강화(인권교육본부)

- 인권침해 및 차별의 사전예방, 사회 일반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인권 교육 활성화
- 정규교육의 핵심인 학교교육팀이 인권교육 분야의 총괄기획기능 겸함
- 법집행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 교육을 전담하는 공공교육팀, 일반시민사회영역의 평생교육 등 일반 국민 대상의 인권교육 및 홍보를 전담할 시민교육팀 등 설치

#### ● 조직·인사혁신 전담 부서 설치(혁신인사팀)

- 조직·인사운영에 대한 전문적·전략적 접근
- 성과 평가를 토대로 한 인사 배치 및 체계적 교육 연수 시스템 구축

## ■ 부서별 예정 업무

### 1. 인권정책본부

#### ● 주요업무

-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전략 정책 등 인권정책의 총괄 조정
- 인권정책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 국제인권분야 통합 수행
- 장기과제 및 사회권 분야 업무 담당

● 팀별 업무분장 및 정원

부서명	주요 예정 업무	정원	현 부서
[정책총괄팀]	인권정책 중장기 전략 수립, 종합 NAP/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관련 업무 인권관련 법령 의견 제시 긴급 대응 필요 인권현안(각 영역별 현안 제외) 인권 실태조사의 기획·총괄 및 지원	9	정책총괄 법제개선 인권연구
[국제인권팀]	국제인권 조약기준 및 국내이행 관련 위원회 차원의 국제 교류 협력 활동	6	법제개선 국제협력
[인권연구팀]	북한인권 등 장기 과제 사회권 영역 관련 조사, 정책 개선 및 국내외협력	6	인권정책국 교육협력국

※ 참고사항

- 국제인권팀의 국제협력을 각 분야별 팀의 국제협력을 총괄·지원

## 2. 행정기획본부

● 주요업무

- 위원회 업무의 총괄 기획
- 성과평가를 기초로 입체적 조직·인사업무 수행
- 정보화 시스템 개발 및 관리

● 팀별 업무분장 및 정원

부서명	주요 예정 업무	정원	현 부서
[재정기획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예산의 편성 및 조정 대국회업무 수행	6	정책총괄 예산행정
[혁신인사팀]	위원회 혁신 업무의 총괄 조직 및 정원 관리 직원 임용·복무·성과평가·교육훈련 등 담당	12	예산행정 총무과
[정보관리팀]	위원회 업무 관련 정보화시스템 개발 정보화관련 제도 개선 등	6	정보화담당

※ 참고사항(혁신인사팀의 기능)

- 조직·정원 부문

⇒ 외부환경 변화 및 단위 조직의 성과를 연계·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보다 유연한 조직 및 정원운용이 가능하도록 기능

- 인사평가·교육 부문

⇒ 팀별, 개인별 성과 평가를 토대로 효율적인 인사배치(CDP), 내부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획 및 시행 등 담당

### 3. 인권침해구제본부

● 주요업무

- 진정사건 조사구제
- 소관 업무에 관한 인권실태조사 및 정책개선 사항 연구·권고
- 관련 국내외 협력 업무 등 수행

● 팀별 업무분장 및 정원

부서명	주요 예정 업무	정원	현 부서
[침해구제기획팀]	침해구제소외 및 조정위 의사지원 등 본부총괄 자유권 관련 조사구제기법 개발 다른 팀 소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7	침해조사국 인권정책국 교육협력국
[검·경팀]	관련 진정사건 조사구제 (외국인, 국정원, 특별사법경찰 포함) 기획조사 및 실태조사 등 시행 정책 개선 및 국내외 협력	7	침해조사국 인권정책국 교육협력국
[교정팀]	관련 진정사건 조사구제 기획조사 및 실태조사 등 시행 정책 개선 및 국내외 협력	8	침해조사국 인권정책국 교육협력국
[군팀]	관련 진정사건 조사구제 기획조사 및 실태조사 등 시행 정책 개선 및 국내외 협력	3	침해조사국 인권정책국 교육협력국
[보호시설팀]	관련 진정사건 조사구제 기획조사 및 실태조사 등 시행 정책 개선 및 국내외 협력	4	침해조사국 인권정책국 교육협력국

\* 참고사항

- 침해구제기획팀 : 기타국가기관, 지자체, 입법·사법부 및 프라이버시 관련 업무 담당

## 4. 차별시정본부

● 주요업무

- 진정사건 조사구제
- 소관 업무에 관한 인권실태조사 및 정책개선 사항 연구·권고
- 관련 국내외 협력 업무 등 수행

● 팀별 업무분장 및 정원

부서명	주요 예정 업무	정원	현 부서
[차별시정기획팀]	차별시정소위 및 조정위 의사지원 등 본부 총괄 평등권 관련 조사구제기법 개발 다른 팀 소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6	차별조사국 인권정책국 교육협력국
[성별팀]	관련 진정사건 조사구제 (혼인여부, 임산출산, 가족상황, 성적지향 등 포함) 기획조사 및 실태조사 등 시행 정책 개선 및 국내외 협력	6	차별조사국 인권정책국 교육협력국
[장애인팀]	관련 진정사건 조사구제(병력-病歷 등 포함) 기획조사 및 실태조사 등 시행 정책 개선 및 국내외 협력	5	차별조사국 인권정책국 교육협력국
[사회적신분팀]	관련 진정사건 조사구제 (나이, 학력·학별, 전과 포함) 기획조사 및 실태조사 등 시행 정책 개선 및 국내외 협력	6	차별조사국 인권정책국 교육협력국
[인종차별팀]	관련 진정사건 조사구제 (출신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기획조사 및 실태조사 등 시행 정책 개선 및 국내외 협력	3	차별조사국 인권정책국 교육협력국

\* 참고사항

- 차별시정기획팀 : 차별사건 중 다른 팀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사안 담당

## 5. 인권교육본부

● 주요업무

- 인권침해 및 차별의 사전예방, 사회 일반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인권 교육 활성화
-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령·제도 등 정책개선 사항 연구·권고 및 관련 국내외 협력

#### ● 팀별 업무분장 및 정원

부서명	주요 예정 업무	정원	현 부서
[학교교육팀]	인권교육본부 총괄 및 학교인권교육 기획 학교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 등 정책개선 관련 교육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원 대상 인권연수과정 운영 등	6	인권정책국 교육협력국
[공공교육팀]	검·경·교정·군인 대상 인권교육 기획 공무원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 등 정책개선 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수요원 양성 등	5	차별조사국 인권정책국 교육협력국
[시민교육팀]	사회적 취약집단 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 일반시민 인권의식 제고 관련 정책개선 관련 인권의식 제고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교수요원 양성, 사이버인권교육 운영 등	5	차별조사국 인권정책국 교육협력국

## 6. 인권상담센터

#### ● 주요업무

- 기초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진정내용을 조기에 확정하고 각하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  
→ 진정인 만족도 제고 및 각 분야별 진정사건 부담 경감
- 면전진정 전담직원을 운영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 상담단계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한’ 인권 구제 활동 전개

### ● 업무분장 및 정원

부서명	주요 예정 업무	정원	현 부서
[인권상담센터]	인권상담, 통계유지 및 민원 처리 면전진정 전담 및 진정사건 접수 기초조사 및 조정	15	인권상담센터 조사국

### ※ 참고사항

- 기초조사 : 진정내용을 명확히 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 \* 전화 또는 우편 활용, 불가피한 경우 진정인 등 면담
- 명백한 각하 사건은 즉시 종결
  - \* 상임위원 순번 담당 또는 주심위원회도 활용 등 방안 강구
- 조정의사 타진 및 조정위 회부

## 7. 운영지원팀

---

### ● 주요업무

- 각 부서별 경리업무 통합 수행으로 팀제 운영 지원
- 위원회(전원위, 상임위) 운영 및 체계적 회의록 관리
-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 기타 서무(문서 및 우편물 수발, 월례회의 등)업무

### ● 업무분장 및 정원

부서명	주요 예정 업무	정원	현 부서
[운영지원팀]	경리, 서무업무 위원회 의사행정	14	총무과 예산행정

## 8. 홍보협력팀

---

### ● 주요업무

- 미디어(신문, 방송, 인터넷) 영역 및 사회일반 대상의 위원회 정책홍보

- 인권단체와의 기관협력(분야별 업무협력을 각 분야별 팀에서 담당)

● 업무분장 및 정원

부서명	주요 예정 업무	정원	현 부서
[홍보협력팀]	위원회 정책 홍보 및 기관홍보물 제작 국내 인권기관단체 협력	7	홍보관실 국내협력

※ 참고사항

- 연간보고서 및 뉴스레터 등 발간

## 9. 법무담당관

---

● 주요업무

- 위원회 중요 결정에 대한 전문적 법리검토(검토 여부는 각 팀 판단)
- 법령 질의회신, 행정소송 등 지원

● 정원 : 3명

## 10. 감사담당관

---

● 주요업무

- 위원회 자체 감사
- 위원회 인지도 조사, 기타 사항 처리

● 정원 : 3명

## 11. 인권자료실

---

● 주요업무

- 인권자료실 운영
- 위원회 기록물·발간물 관리 및 정보공개청구업무 수행

● 정원 : 6명

## 워크숍 프로그램 계획(안)

시 간	진행내용	진행자
09:30~10:00	등록	
10:00~10:15 (15분)	위원장 인사말씀(5분) 기획단 설립 취지 및 경과보고(5분) 워크숍 일정 안내	위원장 사무총장 사회자
10:15~11:40 (1시간 30분)	<p><b>분임토론 1 : 우리는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를 원한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라는 민간진영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li> <li>- 전체 토론 형식은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분임토론 형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li> <li>- 또한 인권위 내부와 외부 참가자를 분리하여 분임을 각각 2개씩(상황에 따라 1개도 가능)으로 구성하는 편이 자유로운 토론에 더 적합할 것임. 민간진영은 인권위 내부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는지 들어보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인권위 내부는 바깥의 요구를 들어보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임.</li> <li>- 분임별로 정리자를 선정하고, 전지에 논의 내용을 다른 이들이 보기 쉽게 정리하도록 함.</li> </ul>	업무전략팀 중 1인
11:40~12:00	분임토론 결과 발표	
12:00~13:00 (1시간)	점심 * 점심시간 동안 분임토론 결과와 업무전략팀 초안과 비교 분석	업무전략팀
13:00~14:00 (1시간)	<p><b>2기 인권위 ‘업무목표’ 논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전략기획안 초안 중 업무목표 부분만 설명. 업무목표는 발전기획단 3팀 논의결과를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략기획의 핵심으로서 민간 진영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li> <li>- 오전 분임토론 결과와의 비교 설명(이미 반영된 점, 생각하지 못한 점, 논의가 필요한 점 등)</li> <li>- 업무목표에 대한 수정, 보완, 추가 의견 제출</li> </ul>	업무전략팀 중 1인

	<p><b>분임토론 2 : 인권위와 민간 인권진영과의 바람직한 관계모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위와 인권단체, 인권위와 연구자 간의 바람직한 관계 모델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을 벌이는 자리</li> <li>- 인권위에서 민간에 요청하는 바, 민간이 인권위에 요청하는 바를 구분하여 각각 2개씩의 분임으로 토론을 진행함.</li> </ul> <p>(이때 인권위 내부적으로는 인권위 독립성, 권리구제 변별성 강화 등을 위해 민간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을 것이고, 민간 진영으로서는 그러한 협력 관계의 토대가 되는 신뢰구축과 일상적 협력 강화 방안을 주로 제안하게 될 것으로 보임)</p>	
14:00~15:00	<p><b>분임토론 결과 발표</b></p> <p>-&gt; 인권위 내·외부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 확인 -&gt; 의견차에 대한 전체 토론</p>	위상강화팀 중 1인
15:00~15:50		
15:50~16:10 (20분)	<b>휴식</b>	
16:10~17:40 (1시간 30분)	<p><b>분임토론 3 : 업무전략, 위상강화, 역량강화 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팀 초안의 주요 내용 발제</li> </ul> <p>(업무전략팀의 경우, 목표별 세부 추진전략과 위원회 기능별 세부 추진전략, 세부전략의 우선순위 등을 발표함)</p> <p>- 팀별로 흩어져 초안에 대한 토론 : 역량강화팀 내부 논의 결과, 민간 인권진영과의 관련성이 적어 워크숍에 내부직원만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하나, 이에 대한 인권단체의 의견은 다름. KMS 구축이 인권진영 일반에 미치는 영향 측 면에서나, 인권위 구성원의 인권감수성·지식 교육 이 '실내'교육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나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음.</p>	각 팀별 1인 + 분임토론에서는 외부위원 1인씩이 총진자로 결합
17:40~18:40 (1시간)	<b>저녁식사</b>	
18:40~20:00 (1시간 20분)	<p><b>분임토론 결과 발표</b></p> <p>분임토론 결과에 대한 전체 토론 정리</p>	전체 진행: 사무총장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자      인권관련 전문가 및 단체  
(경유)

### 제목    창립 4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참가 여부 조회

1. 우리 위원회는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간 인권진영의 의견과 바람을 청취하여 이를 현재 작성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에 반영하고, 발전기획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추진동력을 형성하기 위해 불임과 같이 “창립 4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하(단체)의 워크숍 참석 가능여부를 조회하오니, 2005. 11. 17(목) 까지 아래 연락처로 성명, 소속, 직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전화 : 02-2125-9630, 9633, 9634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 이메일 : [song@humanrights.go.kr](mailto:song@humanrights.go.kr)
- Fax : 02-2125-9916

불임 : 창립 4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 계획 1부. 끝.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장

### 직인 생략

담당 일 송

시행 업무전략기획팀 ( 21 )

접수

우 100-842 서울 중구 무교동길 41 글세기빌딩(율지로 1가 16)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전화 (02)2125-9630, 9633, 9634 전송 (02)2125-9916 / [song@humanrights.go.kr](mailto:song@humanrights.go.kr) / 공개

# 창립 4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 계획

## 1. 워크숍 개최 필요성

- 위원회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간부문의 의견과 바람을 청취하고 이를 발전기획안에 반영
- 발전기획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추진동력 형성
- 인권단체의 워크숍 개최 요구 수렴

## 2. 워크숍 개요

가. 일 시 : 11. 21.(월) 10:00 - 18:00

나. 장 소 : 서울 여성 프라자 (대방동 소재)

다. 참석 대상: 약 100명 내외

- 위원회 임직원 : 위원장, 인권위원 및 참가 희망 직원
- 발전기획단 : 단장(사무총장), 3개팀(업무전략기획팀, 위상강화기획팀, 역량강화기획팀) 팀장, 내부팀원 및 외부위원
- 위원회 외부 : 참석희망 인권전문가/단체

\* 정책자문위원,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인권감사단, 인권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참석 희망 여부 조회

다. 워크숍 프로그램 : 복임 참조

### 3 향후 추진 일정

- 워크숍 개최 계획안 확정 : 11. 9.
- 워크숍 참가여부 조회 : 11. 9.~11. 17.
- 워크숍 참가자 확정 : 11. 17.
- 워크숍 참석 안내문 발송 : 11. 18.
- 워크숍 개최 : 11. 21.

붙임 : 워크숍 프로그램(안) 1부. 끝.

## 워크숍 프로그램(안)

시 간	진행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5 (15분)	위원장 인사말씀(5분) 워크숍 개최 배경 및 취지 설명(5분) 워크숍 일정 안내
10:15~11:40 (1시간 30분)	<b>제1세션 : 우리는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를 원 한다</b> *전체토론 형식은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2~3개분임으로 나누어 토론
11:40~12:00 (20분)	분임 토론 결과 발표
12:00~13:00 (1시간)	점심
13:00~14:00 (1시간)	<b>제2세션 : 2기 인권위 비전, 미션 및 업무목표 논의</b> *업무전략기획안 초안 중 비전, 미션, 업무목표 설명 *업무목표에 대한 수정, 보완, 추가의견 논의
14:00~15:00 (1시간)	<b>제3세션 : 인권위 위상 및 역량 강화 방안</b> *인권위 독립성 강화, 권리구제 변별성 확보, 권고실효성 강화, 역량 강화 분임 으로 나누어 토론
15:00~15:50 (50분)	분임토론 결과 발표
15:50~16:10 (20분)	휴식
16:10~17:40 (1시간30분)	<b>제4세션 : 인권위와 민간 인권진영과의 바람직한 협력모델</b> *인권위와 인권단체, 인권위와 연구자 간의 바람직한 협력 모델에 관해 토론 *2~3개 분임으로 나누어 진행
17:40~18:40 (1시간)	저녁식사
18:40~20:00 (1시간 20분)	분임토의 결과 발표, 전체토론 및 정리

\* 상기 내용은 잠정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자 등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결정

제 목 [rights] 국가인권위 발전기획안 관련 워크숍 불참 여부 건  
보낸 일시 2005-11-15 오후 10:18  
보낸 사람 "새사회연대" <nsociety@naver.com>  [주소록에 추가]  
받는 사람 <rights@list.jinbo.net>  
참 조 인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인권회의 운영진으로 일하고 있는 새사회연대 이창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폭시즘이 부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 경찰들. 내일 긴급하게 성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과 관련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11월 14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원안으로 올라온 것은 발전전략과 관련한 특별위원회(사무처 안)이 유보되고 국가인권위원회 발전전략의 수립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들은 모두 사무처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5일(화) 오후에는 상임위원회(위원장, 최영애, 김호준, 정강자 상임)가 있었는데 발전전략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되, 이미 예정되어 있던 “창립 4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사무처 차원의 실무적인 행사로 치루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날 워크숍에는 예정되어 있던 위원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인권단체들과 실무에 결합되었던 사무처 직원만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정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워크숍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에서도 인권단체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워크숍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배움터 등에서 축소해서 하는게 나은지를 물어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제 전원위원회 회의를 방청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워크숍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의식을 인권위원들의 의식을 반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은 수백명이 피투성이가 되어 나뒹구는 시간 감수성 없는 상임위원들은 그 시간에 자기들의 권한 타령을 하고 있으니, 어쨌든 내일 오후 1시까지 의견을 주십시오.

그리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취소쪽으로 의견을 제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민중참여 민중시대 새 사회 연 대  
<http://www.newsolidarity.org>

제 목 [rights] [필독] 국가인권위 발전기획단 관련 정보/의견 추가  
보낸 일시 2005-11-16 오전 00:27  
보낸 사람 인권운동사랑방 <rights@chol.com>   [주소록에 추가]  
받는 사람 <rights@list.jinbo.net>  
참 조 인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입니다.

이창수 씨가 '국가인권위 발전기획안 마련 민간초청 워크숍'과 관련해 보낸 메일에 대해 몇 가지 정보와 의견을 덧붙입니다.

다들 국가인권위로부터 단체 메일 또는 팩스로 오는 21일로 예정된 워크숍 참여 요청 공문을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애초 이번 워크숍은 국가인권위 발전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위원들이 요청하여 국가인권위 향후 3년간의 방향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차원에서 지난 11월 3일 준비모임을 가져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워크숍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구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위상이 크게 낮아진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 1. 인권위 발전기획단 관련 주요 변화

### 1) 11/14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 애초 사무처에서는 그동안 발전기획단 활동 경과와 그동안 마련해온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발전전략 초안'을 보고하고, 향후 사무처가 아닌 인권위원들이 중심이 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날 발전기획단 활동에 대해 인권위원들로부터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제기의 주요 내용은

1) 9.12 전원위원회에 보고된 발전기획단 활동과 관련한 인권위원들의 지적(발전기획단 명칭 문제, 결과 발표 시점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기획단 활동이 진행되었다는 점,

2) 발전기획단의 위상과 활동내용이 당초 인권위원들이 이해한 내용과 다르다는 점 : 인권위원들은 발전기획단이 국가인권위 향후 3년간 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무처 혁신 작업 정도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3) 인권위원들이 겸토하지 않은 사무처안으로 외부단체들과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4) 위원회 증기 업무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없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 한 마디로 발전기획단의 존재 자체와 지금까지의 활동을 모두 문제시하는 지적이 이루어졌고, 발전기획단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향후 국가인권위의 방향과 업무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권위원들의 인식이 거의 없음이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 논의 결과: 이에 따라 전원위원회에서는 워크숍의 개최 여부를 포함하여 발전기획단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임위원회 논의에 전면 위임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2) 11/16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 16일 오후 5시, 상임위원회(조용황 위원장, 최영애/김호준/정강자 상임위원)가 열려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 이 자리의 주요 결정 사항은

- 1) 차기 전원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이 특위가 향후 발전기획안 마련을 주도하도록 한다
- 2) 정책소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다.